

광주지방법원 2024. 4. 23 선고 2023가단524459, 2023가단534852(병합) 판결

[사해행위취소 ·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선, 강지인

피 고 1. B

2. C

3. D

4. E

5.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규훈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23.

## 주 문

1. 피고들과 G 사이의 별지 목록 각 해당란 기재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 가. 피고 F은 242,584,517원,
  - 나. 피고 B은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6,584,517원,
  - 다. 피고 C, D는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각 8,000,000원,

라. 피고 E은 피고 F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1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피보전채권

1) G(이하 ‘채무자’라 한다)은 2015. 2. 4. H은행과 사이에 가계일반자금 명목으로 872,000,000원을 이율 연 6.39%로 정하여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H은행의 위 채권은 2019. 6.경 이후 원고 앞으로 순차 양도되었고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이루어졌다.

2) 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22차전110937 양수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2. 7.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263,235,565원 및 그 중 244,175,790원에 대하여 2022. 7.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3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22. 9. 1. 확정되었다. 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채무자 소유의 경남 거창군 I, J에 있는 K건물 L호 등에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M 경매사건에서 2023. 9. 25. 원고에게 22,936,119원의 배당이 이루어졌고, 위 배당일자 기준 이 사건 채권의 원리금은 273,919,717원으로 되었고, 여기에 채무자 소유의 경남 창원군 N 토지에 진행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O 사건에서 위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31,335,200원으로 이루어져 위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원리금은 242,584,517원이 된다.

#### 나. 채무자의 처분행위 등

- 1) 채무자는 2021. 3. 31.자 소외 P과 사이에 채무자 소유인 부산 수영구 Q아파트 R호(이하 '이 사건 제1아파트'라고 합니다)를 495,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21. 4. 21. P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 채무자는 매수인 P로부터 채무자의 계좌로 2021. 3. 31. 매매대금 중 계약금 3,500만원과 2021. 4. 21. 잔금 455,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2021. 4. 21.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위 455,000,000원 중 130,000,000원을 피고 B에게, 80,000,000원을 피고 C에게, 85,000,000원을 피고 D에게, 110,000,000원을 피고 E에게 각 송금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내지 처분행위'라 한다). 피고 B은 2021. 4. 21.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위 13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피고 F에게 송금하였고, 피고 C, D, E 또한 2021. 4. 21.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위 각 돈(80,000,000원, 85,000,000원, 110,000,000원)을 피고 F에게 그대로 송금하였다.
- 3) 피고 F은 위와 같이 다른 피고들로부터 이체받은 합계 335,000,000원 등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 2021. 4. 21. 소외 S으로부터 부산 연제구 T, U에 있는 V아파트 W호(매매대금 357,5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2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4) 피고 B, E은 채무자의 자녀들이고, 피고 F은 채무자의 배우자이며, 피고 C, D는 피고 F의 지인들이다.

#### 다. 채무자의 무자력

채무자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송금행위 당시 채무자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상태이었다.

[인정 근거 : 갑제1 내지 2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사해행위의 인정여부

1)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은 채무자의 이 사건 각 처분행위 전에 발생되었으므로 사해행위취소에 있어 피보전권리가 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가 피고 B, C, D, E에 대하여 별지 목록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송금행위를 함으로써 위 피고들의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각 돈을 수여하고 위 피고들이 이를 승낙하는 증여계약이 각 이루어졌다(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 한다)고 할 것인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의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더욱 감소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위 피고들 및 위 피고들의 증여금에서 합계 335,000,000원을 송금받아 전득한 피고 F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35465 판결 참조)].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채무자에게 대여한 9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130,000,000원을 받은 다음 채무자의 부탁으로 위 대여금을 제외한 40,000,000원을 피고 F에게 송금하였을 뿐이고, 피고 E도 채무자에게 대여한 134,8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피고 C, D는 피고 F의 부탁을 받아 위 피고들 앞으로 송금된 돈을 즉시 피고 F에게

이체해 주었을 뿐이다. 피고 F이 송금받아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335,000,000원은 채무자에게 대여한 170,057,408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과 피고 B으로부터 빌린 20,000,000원과 피고 E으로부터 빌린 110,000,000원을 합한 것일 뿐이고, 예비적으로 채무자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의 돈을 이미 재산분할 등으로 받은 이 사건 제1아파트의 매매를 통해 받은 것이어서 무상으로 전득한 것이 아니다. 피고 B, E, F은 채무자로부터 채무자가 피고 F의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이 사건 제1아파트의 경매로 인한 채무자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하여 투입한 돈에 의해 발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받았을 뿐이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그 인정증거, 갑제24, 25,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의 공동재산인 이 사건 제1아파트를 매도한 대금에 의하여 피고 F이 이 사건 제2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 B, E, F의 채무자에 대한 대여사실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채무자가 피고 B, C, D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 F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할 만한 사정이 있지 않은 점, 피고 F은 2015. 1. 1.부터 2021. 12. 31.까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거의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처분행위일로부터 약 1년 7개월이 지난 2022. 11. 24. 채무자와 피고 F 사이에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점,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행위 당시 이체받은 각 돈에 관하여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받았거나, 피고 F이 채무자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선의 항변 등에 관한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다. 취소의 방법과 범위

### 1) 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수익자, 전득자 별로 부담하는 것이므로 악의의 수익자와 전득자는 각자 취득한 전액에 대하여 가액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된 재산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를 통하여 채무

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고자 하는 채권자취소권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로서의 수익자나 전득자의 가액배상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의 관계에 있다고(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 중 일방으로부터 일탈된 책임재산의 반환을 받음으로써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목적이 달성될 경우에는,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구상관계는 별론으로 하고, 다른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도 소멸한다)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49783 판결 등 판결 참조).

## 2)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채무자가 피고 B에 대하여 한 1억 3,00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한 8,000만 원, 피고 D에 대하여 한 8,500만 원 및 피고 E에 대하여 한 1억 1,000만 원에 관한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의 가액배상으로써 수익자인 위 피고들과 전득자인 피고 F은 각자 이득한 범위 내에서 불가분적으로 공동하여 수익을 반환하여야 하므로, 원고에게, 피고 F은 다른 피고들로부터 전득한 3억 3,500만 원 중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액인 242,584,517원, 위 돈 중 피고 B은 위 피고가 수익한 증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116,584,517원, 피고 C, D는 위 피고들이 각 수익한 증여금 중 원고가 구하는 각 8,000,000원 및 피고 E은 위 피고가 수익한 증여금인 110,000,000원 및 위 각 금액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공동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채승원

별지